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44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720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4486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1. 10. 5.

판결선고 2021. 11. 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33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2010. 12. 6.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8년경부터 사용대금이 연체되어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51616호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0. 지급명령 결정을 얻게 되었고, 위 결정은 2017. 8.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2021. 4. 6.자로 원고가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원리금 합계 32,689,238원에 달한다.

나. D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은 2020. 9.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D을 포함한 자녀 4명(각 상속지분 2/11)과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9. 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33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부 동 산 의 표 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142㎡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백들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1.52㎡



